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-46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3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상위법령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- 나.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  - 제9조 조문명 변경  
(현 행) 제9조(위원회 설치)  
(개정안) 제9조(처우개선위원회)
  - 제9조제1항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근거 ‘법 제3조의2’ 명시, 위원회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변경
  - 제9조제2항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
  -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함.
- 나.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(제9조제3항)
  - (현 행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
  - (개정안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다. 불필요한 규정 삭제 : 제11조(시행규칙)

#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3. 2. 9. ~ 3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
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3.3.17.) 결과  
: 수정의결되어 제9조제1항 재정비, 제9조제2항 및 제3항 수정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위원회 설치)”를 “(처우개선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”로, 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”를 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”로 한다.

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</li> </ol>	<p>제9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구청장은 <u>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p>

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 
한다.

<삭 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 
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최자윤
연 락 처	02-3153-8832